
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
(정유섭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66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12. 21.

발 의 자 : 정유섭 · 김성원 · 이은권  
강석호 · 이채익 · 윤한홍  
김종석 · 윤종필 · 김정재  
신보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빈집으로 규정하고 빈집의 정비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, 최근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이 제정·시행(2018.2.9.)되면서 현행법과의 관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현행법 상 빈집에서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빈집을 제외함으로써 법률 간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(안 제81조의2).

법률 제 호

##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빈집은”을 “빈집 및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은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1조의2(빈집 정비)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(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빈집은 제외하며, 이하 “빈집”이라 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빈집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	<p>제81조의2(빈집 정비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빈집 및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은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